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 (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이 보험상품은 보장성보험(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으로 은행의 예, 적금과는 다른 상품이며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상품내용, 보험료, 환급률 등 본 자료에서 설명된 내용은 실제 청약시점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KB라이프

- 상품명 : 무배당 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무배당 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상품구조
  - 보험종목 :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보험기간 : 종신
  - 납입기간 : 5, 7, 10, 15, 20년납
  - 가입나이 : 30세 ~ 70세 (납기에 따라 다름)
  - 보험료 산출 시 적용이율 : 2.5%(금리확정형)
  - 최저가입금액 : 2천만원
  - 제도성특약(의무부가특약) : (무)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무)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
    - 가입당시연금전환특약: 계약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신청 가능
    - 가입당시유가족연금전환특약: 주계약 보험가입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의무부가
    - 공통사항: 보험료율은 전환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에 의하여 계산, 가입시점의 기초서류 및 보험료율을 적용하며, 최저가입금액은 1,000만원
  - 제도성특약(선택특약) : 실버널싱케어특약, (무)실버널싱연금전환특약, 여명급부특약, 사후정리특약, 보장승계특약, 디엔비특약, Wish Plus 특약, 유니버설특약,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자녀사랑맞춤지급특약,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 감액완납, 연장정기, 선납, 보험계약대출 가능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주요 내용

### - 사망보험금

- 가입 시부터 체증시작시점 이전까지 : **기본사망보험금**
- 체증시작시점(5년 경과) 이후 :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씩 정액 체증**(단, 사망시점까지 체증하며 **최대 10년간 체증**)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기간 중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보험료 납입면제 : 동일한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 장해상태** 시

- 장기유지보너스 : 유효한 계약에 한하여 장기유지보너스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 후 적립액에 가산(보험료 변경 시 변경된 보험료 기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보험료 납입기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	5년납	12 x 납입기간 x 주계약보험료 x <b>19%</b>
	7년납	12 x 납입기간 x 주계약보험료 x <b>21%</b>
	10년납	12 x 납입기간 x 주계약보험료 x <b>22%</b>
	15년납	12 x 납입기간 x 주계약보험료 x <b>25%</b>
	20년납	12 x 납입기간 x 주계약보험료 x <b>27%</b>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의 중도인출: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연 12회, 100% 범위 내에서 인출** 가능

단, 적립액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음

- 중도인출, 추가납입 : 불가(단,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내에서 인출 가능(재납입 불가), 유니버설특약을 통한 추가납입/중도인출 가능)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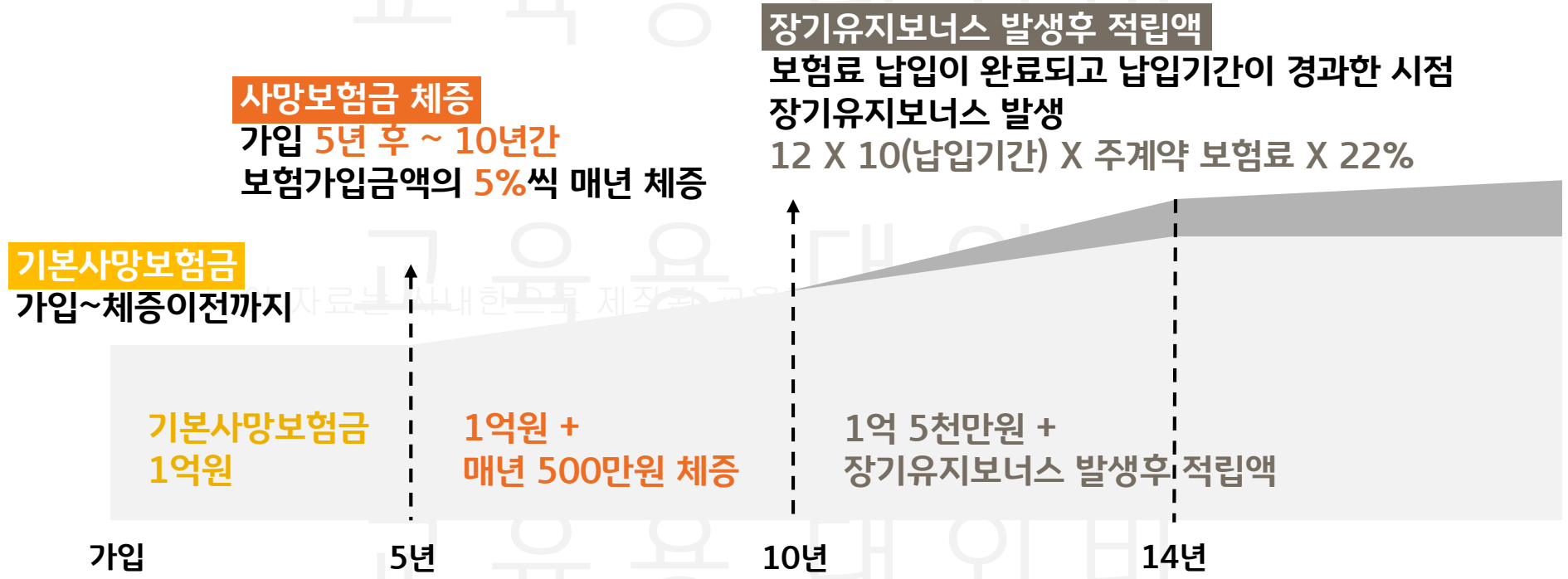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상품도해 예시(10년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억원 기준)



- ①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 중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으로 지급
- ② 기본사망보험금: 체증시작시점 이전까지는 보험가입금액으로 하며, 체증시작시점(5년) 이후에는 사망시점까지(최대 10년)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일정비율(5%)만큼 체증하여 계산된 금액
- ③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이전 사망 시: 장기유지보너스적립액을 사망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
- ④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적용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일자 계산하여 부리 적립한 금액으로 다만,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의 일부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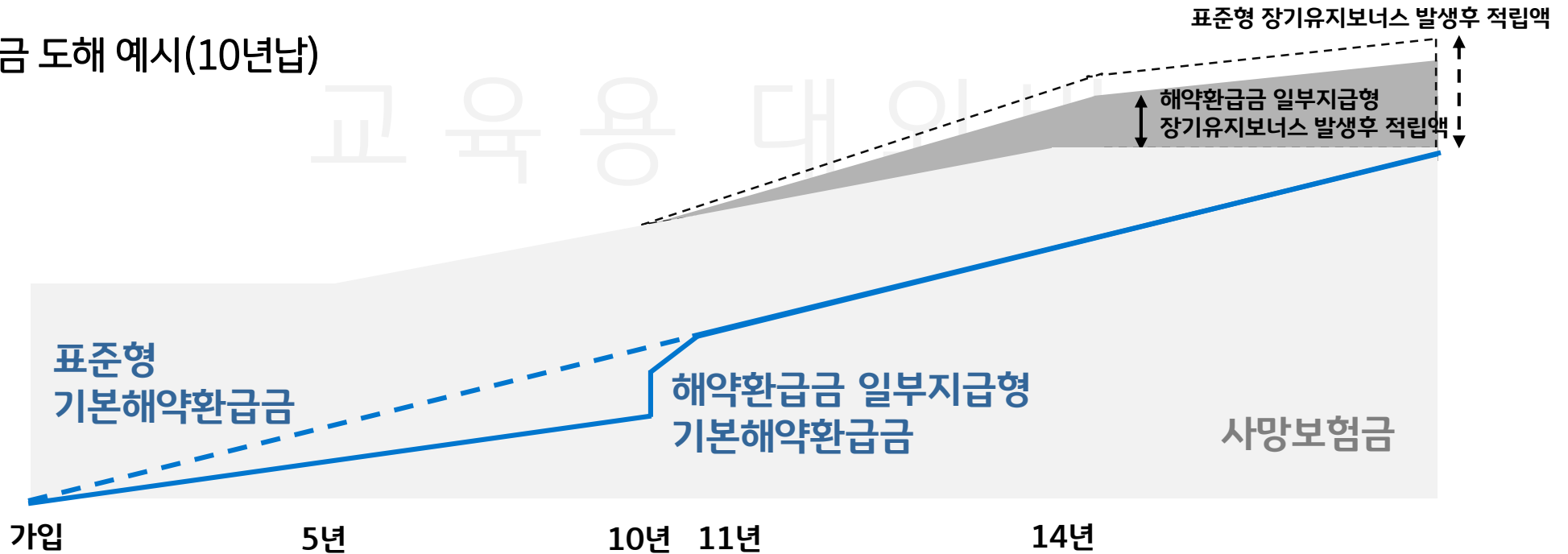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해약환급금 도해 예시(10년납)



이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교육자료로서 고객대상 설명을 금지함

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대신 표준형보다 낮은 보험료로 가입이 가능**

②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은 해지율이 적용되어 계산되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에는 해지율이 적용되지 않음

③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해약환급금]

- 보험료 납입기간 중: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일정비율**\*오른쪽 표 참고
- 보험료 납입이 완료되고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 **표준형의 기본해약환급금과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을 더한 금액**

④ 상기 환급률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대비 해약환급금(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포함)의 비율을 의미

⑤ 보험료 납입 완료 후 납입기간이 경과한 시점부터 1년 동안 해약환급금은 점차 증가하여 1년 경과시점에 표준형 기본해약환급금과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을 더한 금액과 동일

⑥ 기본해약환급금: 기본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금액을 공제한 금액

납입기간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환급률	101.3%	103.6%	106.6%	111.4%	115.1%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보험료 예시

기준: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단위: 원

구분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30세	40세	50세	30세	40세	50세
5년납	남자	451,800	509,100	575,700	442,200	498,000	562,500
	여자	427,500	479,700	543,000	418,800	469,500	531,000
7년납	남자	329,100	371,400	420,900	319,200	359,700	407,400
	여자	311,400	349,800	396,600	302,400	339,000	383,700
10년납	남자	235,800	266,400	303,300	226,200	255,000	290,400
	여자	222,900	250,500	284,700	214,200	240,300	272,400
15년납	남자	164,700	186,600	214,500	157,500	178,200	204,900
	여자	155,400	175,200	199,800	149,100	167,400	190,500
20년납	남자	130,200	148,200	172,500	123,900	140,700	164,100
	여자	123,000	138,600	159,000	117,300	131,700	150,900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해약환급률 예시

기준: 남자, 40세,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의 경우, 가입속성에 관계없이 완납시점 환급률 고정

구분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5년납	7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1년	60.4%	50.5%	38.7%	26.1%	19.2%	30.9%	26.1%	20.2%	13.7%	10.1%
3년	77.4%	73.1%	69.4%	64.4%	60.7%	39.6%	37.7%	36.2%	33.7%	31.9%
5년	101.5%	79.2%	77.0%	73.4%	70.2%	<b>101.3%</b>	40.9%	40.2%	38.4%	37.0%
7년	104.8%	104.1%	81.5%	78.4%	75.2%	106.7%	<b>103.6%</b>	42.5%	41.0%	39.6%
10년	110.0%	109.3%	106.6%	81.2%	77.8%	112.0%	112.1%	<b>106.6%</b>	42.5%	41.0%
15년	119.2%	118.4%	115.5%	111.2%	82.2%	121.3%	121.5%	119.6%	<b>111.4%</b>	43.3%
20년	128.8%	128.1%	124.9%	120.4%	114.0%	131.0%	131.3%	129.2%	124.7%	<b>115.1%</b>
30년	149.9%	149.3%	145.6%	140.5%	133.0%	152.4%	153.0%	150.5%	145.4%	138.3%
40년	172.5%	172.2%	167.9%	162.2%	153.6%	175.3%	176.2%	173.3%	167.6%	159.5%

- ①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입니다.
- ②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유지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해약환급금 예시

기준: 남자, 40세, 10년납,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단위: 원

구분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납입보험료 누계	주계약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납입보험료 누계	주계약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해약환급률
1년	3,196,800	30,627,753	1,237,500	38.7%	3,060,000	30,600,890	618,900	20.2%
3년	9,590,400	31,930,734	6,651,900	69.4%	9,180,000	31,848,112	3,326,100	36.2%
5년	15,984,000	34,799,678	12,306,300	77.0%	15,300,000	34,658,475	6,153,300	40.2%
7년	22,377,600	39,237,924	18,227,100	81.5%	21,420,000	39,035,175	9,113,700	42.5%
10년	31,968,000	46,032,960	34,077,060	106.6%	30,600,000	45,732,000	32,619,600	106.6%
15년	31,968,000	52,957,149	36,925,149	115.5%	30,600,000	52,616,640	36,584,640	119.6%
20년	31,968,000	54,002,783	39,930,683	124.9%	30,600,000	53,617,529	39,545,429	129.2%
30년	31,968,000	56,524,324	46,548,424	145.6%	30,600,000	56,031,166	46,055,266	150.5%
40년	31,968,000	59,752,109	53,660,609	167.9%	30,600,000	59,120,825	53,029,325	173.3%

- ①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기간 중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보험가입금액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본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이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유지비용, 해약공제금액 등이 차감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③ 상기 예시된 사망보험금은 해당시점에 체증이 적용된 이후의 금액입니다.
- ④ 상기 사망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환급률은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인출이 없는 경우)을 포함한 금액이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이 도래하기 이전에 해지 시 예시된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⑤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 간편심사에 관한 사항

-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 ① 간편심사란 의적결함 및 연령제한으로 인하여 보험시장에서 소외되고 있는 유병력자나 고연령자 등의 계약심사 및 건강검진의 부담을 줄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표준체에 비하여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활용하여 계약심사 과정을 간소화함**을 의미한다.
- ② 회사는 간소화된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 이외의 병력 정보는 계약심사 과정에 반영하지 않는다.
- ③ 피보험자가 **표준체에 해당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 항목을 통하여 보험가입 여부에 대한 의적심사를 거쳐 가입 가능한 일반심사보험이 존재하는 경우, 회사는 간편심사 상품과 일반심사보험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하여 설명하고, 이에 대한 계약자 확인을 받는다.** 이 경우 비교 대상인 일반심사보험은 이 상품보다 가입금액 등 보장내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운영한다. 또한, 비교대상상품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다.
- ④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당사 일반심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본 계약의 보험금이 이미 지급되거나 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 ⑤ 위 사항에 의하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보험계약자에게 반환한다.
- ⑥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당사 일반심사보험에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당사 간편심사보험 가입을 원하는 경우, 당사 간편심사보험에는 가입할 수 없고 일반 계약 심사를 통하여 일반심사보험에는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한다.
- ⑦ 간편심사상품의 청약서는 일반심사보험의 청약서와 구별되도록 청약서 색상을 차별화하여 적용한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간편심사 상품에 대한 비교 예시

상품구분	(무) 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무) 함께크는 종신보험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표준형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단, 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50% 지급)				보험가입금액 : 3,000만원			
계약승낙 여부	일반심사 상품 대비 질문항목(고지)을 간소화하여 지병이나 기왕력이 있어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및 직업에 따라서 청약에 대한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예시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10년납 기준	30세~70세	30세~70세	30세~67세	30세~70세	만15세~65세	만15세~65세	만15세~65세	16세~65세
30세	235,800	222,900	226,200	214,200	228,300	216,000	219,300	207,600
40세	266,400	250,500	255,000	240,300	257,100	242,100	246,600	232,200
50세	303,300	284,700	290,400	272,400	292,800	274,800	280,200	263,100

- ① 이 상품은 “간편심사”상품으로 **유병력자 또는 고연령자 등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② 이 상품은 “간편심사” 상품으로 일반심사보험 대비 보험료가 다소 높습니다. **의사의 건강검진을 받거나 일반계약심사를 할 경우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심사보험의 경우 건강상태나 가입나이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으며 보장하는 담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③ 비교 대상 상품은 회사에서 판매 중인 유사한 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설계사 교육용 | 고객배포 금지



## • 보험가격지수와 관련된 사항

상품명	보험기간	납입기간	보험가격지수	가입금액
(무) 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종신	20년납	남자: 117.6% 여자: 121.9%	1억원
(무) 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종신	20년납	남자: 117.6% 여자: 120.4%	1억원

- ① 상기 수치는 상품별로 지정된 대표연령(40세, 단 어린이 보험의 경우 5세), 성별(가입성별),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및 납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하였으므로 실제 가입내역과 다를 수 있습니다.
- ② 보험가격지수: 해당상품의 보험료총액(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및 보험회사의 사업경비 등을 위한 보험료)을 참조순보험료 총액\* 과 평균사업비총액\*\* 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
- ③ \* 평균공시이율 및 참조순보험료요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순보험료
- ④ \*\* 상품군별 생명보험상품 전체의 평균 사업비율을 반영하여 계산(역산)한 값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 • 주요 내용

- 추가계약자 적립액 : 공시이율(최저보증이율: 경과기간 5년 미만 1.00%, 5년 이상~10년 미만 0.75%, 10년 이상 0.50%) 연복리로 적립
  - 추가납입보험료 : 이 특약을 통해 보험기간 내에 주계약 보험료 이외에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내에서 추가로 납입하는 보험료
  - 추가계약자적립액 : 추가납입보험료에서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공시이율(연단위 복리)로 납입일부터 일자계산하여 부리 적립함
  -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 :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총액의 100% 이내** (단,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이 있었을 경우에는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에 인출금액의 누계를 합산한 금액을 추가납입보험료 납입한도로 함)
  - **추가계약자적립액의 인출 :**
    - ① 보험연도 기준 **연12회에 한하여 추가계약자적립액의 100% 이내에서 인출 가능** (단, 계약자적립액의 인출은 이 특약에 의한 추가계약자적립액에서 우선 인출되며, 추가계약자적립액이 없는 경우 주계약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인출 가능)
    - ② 각 인출시점까지의 총 인출금액(주계약의 장기유지보너스 발생후 적립액 인출금액 포함)은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와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 합계를 초과할 수 없음
    - ③ 추가계약자적립액 인출 시 수수료는 없음
    - ④ **적립액 인출 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부리되는 이자만큼 해약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해약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음**
-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및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은 세법 상 보장성보험으로 분류되어 관련 세법을 적용 받습니다. 단, 유니버설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세법 상 저축성보험으로 분류되어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과세 한도에 주계약 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특약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포함됩니다. 세제 관련 사항은 소득세법시행령 제25조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관련 세법의 제•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으로 설명의무 등 판매 행위의 법령위반 시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입증책임이 소비자에서 금융회사로 전환되었고, 위반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강화되어 영업활동 전반에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 6대 판매규제 :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동 준수사항



### 1.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 또는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권유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 변액보험 및 이와 유사한 금융상품이 해당

#### [적합성/적정성 진단 필수 정보]

- 보험 계약 체결의 목적, 재산상황,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의 취득 또는 처분 경험
- 보험 계약자의 연령, 변액보험에 대한 이해도, 위험에 대한 태도, 금융상품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식의 수준
- 보험계약 체결 권유 전 면담 또는 질문을 통해 계약자의 정보 파악

### 2.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의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하고 확인받아야 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고객이 적합한 상품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고객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진단프로세스 준수 (판매인 임의 진단 금지)
- 적합성/적정성 진단 후 서술 형태의 진단서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함

## 6대 판매규제 : 금융상품 유형별 영업행동 준수사항

### 3.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중요한 사항을 설명**

설명 의무 이행에 필요한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 ▶ **핵심 상품설명서** 제공을 전체 보험상품으로 확대 적용
- ▶ **중요한 사항**: 계약을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상품 설명 시 거짓/왜곡된 설명 또는 중요한 사항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고객이 이해하였음을 확인

### 4.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규제입니다.

- ▶ 대출 상품 계약 시 소비자 의사에 반하는 금융상품 계약체결 강요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고객에게 상환목적으로 해약 후 새로운 보험을 가입시키는 행위 금지 등

### 5.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 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하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 금지**

올바른 계약체결의 권유를 유도하고 부당 권유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 제공,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고지 등
- ▶ **상품속지 의무(Know your product Rule)**를 추가로 규정, 상품판매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지 않는 자의 권유 행위 금지

### 6. 광고 관련 준수

금융상품 또는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 ▶ 중요사항을 과장/왜곡/은폐하거나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를 사용하는 행위 금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영업활동 시 회사의 승인을 받은 안내 자료만 사용해야 함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금융상품 거래단계별 체크리스트 예시



금융 상품 권유 · 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구분	업무	금융 상품 권유 · 계약 시 알아야 할 중요사항	
권유 전	고객 유형 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금성·대출성 상품 포함) 일반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하는 절차</li> </ul>	
금융상품 추천 (적합성 원칙 적용 시)	일반금융소비자의 정보 파악·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융상품 유형에 따라 법령상 규정된 고객정보(연령, 재산상황, 투자성향 등) 파악 후 고객 확인 징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권유 전 고객이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li> <li>② 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li> <li>③ 고객이 원해도 고객에게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습니다.</li> </ul>
	적합성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출성 상품도 적합성 평가 절차 신설</li> <li>✓ 법령에 따라 마련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평가 → 적합성보고서 작성(고객에는 미제공)</li> </ul>	
	금융상품 추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원확인서·부적합확인서 징구 불가</li> </ul>	
설명	설명서 제공·설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설명서”나 “간이투자설명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금소법상 필수 안내정보 중 해당 설명서에 없는 부분만 별도로 설명서를 제공</li> <li>✓ 설명한 사람이 “설명 내용과 설명서가 동일하다는 사실”에 대해 설명서에 서명할 것(예금성·대출성 상품은 제외)</li> <li>✓ 일반금융소비자는 판매자의 금융상품 권유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설명요청권이 있음을 고지</li> <li>❖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를 통해 설명서 제공 및 설명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추가 제공 불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④ 설명의무는 새로운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합니다.</li> <li>⑤ 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li> <li>⑥ 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합니다.</li> </ul>
	고객 이해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객이 설명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는 사실”을 서명(전자서명), 기명날인, 녹취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 받을 것</li> <li>✓ 고객에게 해당 확인이 소송, 분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릴 것</li> </ul>	
계약	계약서류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약서류: “계약서, 약관, 설명서, 보험증권”</li> <li>✓ 권유 단계에서 설명서가 제공된 경우에는 설명서 제공 불필요</li> <li>✓ 계약 후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으로 계약 서류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고객이 특정 방식을 희망할 경우 그 방식에 따라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⑦ 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li> <li>⑧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li> <li>⑨ 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가 아닙니다.</li> </ul>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상품 설명 내용에 대한 주요 안내사항



### 주요 내용 (상품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

구분	주요 내용 (상품별로 해당되는 사항에 대해 안내)
1	보험회사, 보험모집자에 대한 정보(소속, 지위)에 관한 사항 및 보험상품의 보험료납입기간,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계약의 개요(특약별 납입기간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2	청약철회, 계약취소, 고지의무 및 위반 효과, 보험료 감액청구권, 위법계약해지권 등 보험가입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3	「e-클린보험서비스」(www.e-cleanins.or.kr)를 통한 모집자의 주요 정보 조회에 관한 사항
4	보험계약(주계약 및 특약)의 <b>보험료 및 보장내역</b> ※특약 가입 관련 안내(갱신형특약의 경우 갱신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갱신주기 및 절차 등에 대한 주의 설명 포함)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 또는 암직접치료통원급여금 담보에 가입하신 경우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 ※암수술급여금 담보에 가입하신 경우 해당 담보에서 항암방사선 및 약물치료는 보험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내용
5	보험금 지급관련 보장하지 않는 사항 등 <b>보험금 지급관련 유의사항 및 보험금 청구 지급절차</b>
6	계약의 해지 및 무효, 적용이율, 해약환급금, 갱신형특약, 중도인출, 상품별 특이사항 등 <b>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b> 변액보험계약의 경우 투자 형태 및 구조, 중도해지 시 최저보증이 되지 않는 내용에 관한 사항
7	예금자보호, 주요 민원사항,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절차 등 <b>보험계약자 보호에 관한 사항</b>
8	보험모집자의 <b>업무범위(보험료·고지의무 수령 가능 여부), 보험계약전환, 소멸시효, 계약변경, 보험사기에 관한 사항</b> 등 기타유의사항
9	<b>종신보험계약</b> 의 경우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 연금액 비교 예시 등에 관한 사항 <b>변액보험계약</b> 의 경우 변액보험 등에 대하여 상품설명서를 보충하기 위해 별도로 제공된 변액보험 운용설명서를 이용한 설명에 관한 사항
10	<b>보험수익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b> 에 관한 사항, <b>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b> 에 관한 사항 *1) 모집자(설계사)가 계약자의 대리청구인 자격자 존재 여부를 확인했는지 여부 2) 계약자의 지정 의사확인, 미지정시 지정불능, 지정거부 등 사유확인 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3) 대리청구인 미지정 시 모집자(설계사)가 대리청구인 지정 제도의 취지 등 유의사항을 재안내했는지 여부 신규 추가
11	<b>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의무 강화</b>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연금보험과 비교 안내

❖ 상품공시시행세칙에 따라 종신보험 판매 시 상품설명서의 연금보험과 비교 안내 설명

[일반적인 종신보험 및 연금(저축성)보험의 특징]

구분	종신보험(연금전환특약)	연금보험 등 저축성보험
가입 목적	▪ 사망보험금으로 유족 보장(단, 사망 이전에 연금으로 전환 가능)	▪ 연금 수령 등 노후 대비를 위한 저축
장점	▪ 고액의 사망보험금 설계 가능	▪ 안정적인 목돈(연금액) 설계 가능
단점	▪ 연금전환 시 연금보험 대비 적은 연금액	▪ 사망 등 보장기능 미흡

[일반적인 종신보험 및 연금보험의 해약환급금, 사망보험금, 연금액 비교 예시]

구분	경과년수/연금개시시점	납입보험료	A종신보험(연금전환 시)	납입보험료	B연금보험
해약환급금(율)	1년	334	0 (0.0%)	360	225(62.6%)
	5년	1,668	1,099(65.9%)	1,800	1,589(88.3%)
	10년	3,336	2,522(75.6%)	3,600	3,462(96.2%)
	15년	5,004	4,004(80.0%)	5,400	5,637(104.4%)
	20년	6,672	5,661(84.9%)	7,200	8,030(111.5%)
사망보험금	종신	-	1억원	-	사망 시 계약자적립액
연금연액	20년	6,672	251	7,200	341

- ① A종신보험: 20년납, 40세 남자, 월납 27.8만원, 보험가입금액 1억원(\* 연금연액은 10년보증 종신연금 기준으로 산출 가정)
- ② B연금보험: 20년납, 40세 남자, 월납 30만원(평균수익률은 2.25%가정)
- ③ A종신보험의 적용이율은 2.50%, 연금전환 및 B연금보험의 공시이율은 2.50%를 가정하여 적용산출, 최저보증이율 적용시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 및 연금연액이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 ④ 본 예시금액은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로서 상기 기준에 따라 예시로 산출된 금액이며, 실제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례

A씨는 간경화를 진단받고 입원 및 투약 치료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고 OO종신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후 간경화가 악화되어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보험가입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사가 청약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계약 전 알릴 의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보험가입자가 청약서의 질문표에 답변을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렸을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 타인의 생명보험 가입 관련 사례

A씨는 B씨의 자필서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B씨를 피보험자로 하는 OO종신보험을 가입하였고, 이후 B씨가 사망해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계약 무효처리 및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사항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무효 처리됨

##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관련 사례

OO종신보험의 피보험자인 A씨가 사망 후 사망보험금 수익자가 보험금 청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보험사고일로부터 3년이 한참 지난 후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 유의(참고)사항 :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그 기간을 경과하면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



“이율이 좋은 저축상품이라고 들었는데요?”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노후대비를 위한 저축성 보험, 적금계산기로 상품을 설명하며 저금리 시대에 이율이 좋은 저축상품으로 설명 받고 청약하였는데 최근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임을 알게 됨.



고객이 이해하기 쉽도록 납입한 보험료와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의 완납 시 환급률을 적금계산기를 통해 설명하고, 종신보험임을 충분히 설명하였음.

## □ 민원접수 패턴

▶ 납입기간 종료 전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적거나 없다는 점을 설명 받지 못하였고, 저축, 연금상품으로 설명 받았다는 내용의 민원이 빈번히 접수

## □ 유의사항

-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표준형의 해약환급금 대비 적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체결 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설명 하실 때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과 환급률을 표준형과 비교**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납입기간 완료 후 해약환급금이 올라가는 특징으로 인해 환급금과 환급률을 강조하여 연금 혹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으므로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은 보장성보험이라는 점을 강조**해주시기 바라며 **고객이 저축,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보험가입 목적이 저축이었는데... 알고 보니 종신보험이라구요?”

보험가입 목적이 저축이었음. 자유롭게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이 가능한 저축상품으로 알고 가입하였으나 최근 종신보험임을 알게 되어 납입보험료의 반환을 요구함.



청약 당시 고객의 보험가입 목적은 저축이었음. 사망보장도 가능하며 유니버설특약 부가를 통해 추가납입과 중도인출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어서 고객에게 가입을 권유하였으며 사망보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유니버설 기능을 강조하여 설명한 것은 맞으나 저축보험이라는 설명을 한 사실은 없음.

## □ 민원접수 패턴

- 추가납입, 중도인출과 같은 유니버설 기능이 포함된 보장성 보험에 대해 유니버설 기능으로 인해 저축상품으로 설명 받고 가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민원이 빈번히 접수되고 있음.
- 특히, 보험상품 가입 목적이 저축이었고, 사망보장은 부수적인 기능으로 저축보험으로 인지하고 있었고 종신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는 민원이 접수되고 있음.

## □ 유의사항

- 추가납입, 중도인출과 같은 유니버설 기능은 상품의 기능 중 하나이므로 청약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설명 시 고객이 유니버설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을 저축보험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유니버설 기능은 상품의 부수적인 기능이며 사망사고를 보장하는 종신보험임을 강조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 목적이 저축인 고객에게 유니버설 기능이 포함된 종신보험을 권유하게 되면 청약과정에서 가입한 상품이 종신보험임을 충분히 설명하셨다고 하더라도 고객의 보험가입 목적 자체가 저축이었기 때문에 결국 저축상품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민원이 접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저축,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시어 Needs Based Selling이 될 수 있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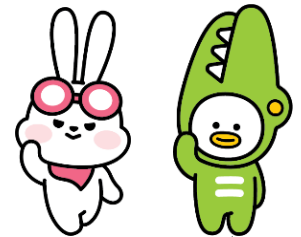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GSM-2302014-1

보험료 납입기간이 단기이고 보험료 완납시점(5~10년)에 기납입보험료의 100% 이상을 환급하는 **단기납 종신보험 상품의 환급률을 강조하여 모집할 경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향후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목적이 저축이나 목돈마련인 소비자에게 본 상품을 권유할 경우 향후 본 상품을 저축이나 연금으로 알고 했다는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저축, 연금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설명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제 19조 설명의무, 제 21조 부당권유행위금지** 등에 해당하여 5대 판매규제 위반으로 인한 **제 47조 위법계약의 해지**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금소법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내용

- (소비자 위험요인 1) 불완전판매 위험  
보험 안내자료 등을 통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가입 권유 시, '매년 사망보험금이 올라간다'는 측면만 강조되고, 보험금 증가에 따른 계약자의 보험료 부담 등에 대한 안내는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소비자 위험요인 2) 승환계약 위험  
최근 보험모집조직에 의한 보험 리모델링 확산에 따라 체증형 종신보험에 대한 승환계약 발생 가능성이 증가됨. 기존계약 해지로 인한 손실 가능성,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가 우려됨.
- (소비자 위험요인 3) 조기해지 위험  
체증형 종신보험의 상당수가 무·저해지 형태로 판매되어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 통상 종신보험의 장기유지율이 낮아 무·저해지 환급형 계약 해지 시 손실이 확대됨.

## 대외비

- (유의사항 1) 체증형 종신보험은 평준형 대비 보험료가 비쌉니다.  
일부 보험사의 안내자료에는 보험료 상승에 대한 언급 없이 사망보험금이 체증되는 사실만 안내하고 있으나, 향후 수령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도 증가하며, 중도해지 시 손실이 확대될 수 있음.
- (유의사항 2) 종신보험 승환시 금전적 손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승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신계약에 대해서는 예정이율 인하 및 연령 증가 등으로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고, 일부 담보에 대해 가입이 거절될 수 있음.
- (유의사항 3)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적습니다.  
장기유지율이 낮은 체증형 종신보험은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하여 많이 판매되고 있으며, 무·저해지 환급형은 납입기간 중 조기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음.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 가입 관련 금융감독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 상품 판매 시 유의사항

■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한 체증형 종신보험의 경우, 중도해지 시 표준형에 비해 해약환급금이 적음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저해지 상품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표준형 상품보다 적은 해약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이에 청약 당시 무·저해지 상품은 상품설명서 내의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상품 가입에 대한 계약자 확인서'를 통해 고객에게 표준형과의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을 비교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험료가 증가함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지급액이 전 기간 동일한 평준형과 달리 가입 후, 일정기간 경과 시 보험금이 증가하는 종신보험입니다. 이에 따라 상품권유 및 청약 시, 평준형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높다는 점을 고객에게 꼭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료는 상품의 주요내용으로 충분한 설명없이 청약을 진행하였을 경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설명의무위반과 부당권유행위에 해당됩니다.

## 대외비

■ 승환(리모델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비 중복 부담 등 금전적 손실 발생에 대해 고객에게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험 리모델링이라 불리는 승환, 보험 갈아타기, 보험 재설계는 원금 손실 가능성, 보장 범위의 감소, 사업비 중복 부담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기존 보험 해지 시, 해지 및 신규계약에 대한 비교 등 충분한 설명을 고객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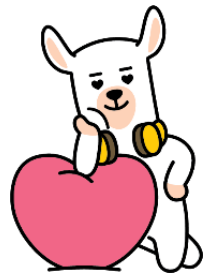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에 따라 설명의무에 대한 고객과의 분쟁 발생 시, 금융상품판매업자가 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에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됩니다. 금소법의 제정으로 상품설명 의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상품의 설명 시, 더욱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이 상품은 사망보장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은행의 예, 적금과 다른 상품이고, 저축(연금)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 ❖ 청약 시에는 보험계약의 기본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 청약 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상품 내용을 설명 받을 수 있게 안내하기 바랍니다.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할 것을 권고합니다.
- ❖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반드시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께서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셔야 하며 보험설계사 등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 청약철회 청구제도를 이용하여 계약을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이거나,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청약시점에 만 65세 이상인 보험계약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청약한 날부터 45일)을 초과한 경우는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 ❖ [일반금융소비자]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 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인 보험계약자를 말합니다.
- ❖ 모집종사자가 계약에 관한 중요내용의 설명 등을 잘 이행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보험약관 및 계약자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 때 또는 계약을 청약할 때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및 전자서명 등)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가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내용을 확인하십시오.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됩니다.(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 위법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사항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청구권 및 계약자적립액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③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일반사망보험금의 경우 '고의적 사고 및 가입 후 2년 이내 자살 시' 지급이 제한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보험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가입제한 보험계약가입 시 위험직종 등으로 인해 가입이 거절,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청약서 부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주소 또는 연락처,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 **배당에 관한 사항** 이 상품은 무배당 상품으로 배당이 없습니다.
-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이면 보호하지 않습니다.
- ❖ **세제혜택**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 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특별세액공제) 1항에 의거 근로자가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한하여 납입보험료(연간 1백만원 한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은 관련 세법의 제·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 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 **예시된 해약환급금 또는 만기환급금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 **기존 계약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인수거절, 보험료 인상, 보장내용 축소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 97조]** ① 부당 승환계약 ② 고지방해 ③ 경유계약 ④ 청약서류 대필(부분 대필 포함) ⑤ 구속성 계약 등
- ❖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 제 98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여서는 안 됩니다.
- ❖ **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와 관련된 사항** 상법 제647조(특별위험의 소멸로 인한 보험료의 감액청구)에 따라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감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 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고령계약자와 관련된 사항** 고령금융소비자가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급적 쉬운 용어와 느린 속도로 설명하여야 하며, 원금손실 가능성 등 불이익 사항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반드시 이해여부를 확인 하는 등 고령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 **보험상담 및 분쟁조정 안내**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 시 신속히 해결해 드립니다. ■ 당사안내: 1588\_3374 ■ 생명보험협회(본부 대표 전화): 02\_2262\_6600 ■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1332
- ❖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 아래를 참조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상품의 이해를 돕기 위한 요약자료입니다. 본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상품에 제시된 보장내용, 보험기간 등을 변경하여 보험설계를 하실 경우, 당사의 상품과 유사한 다른 회사의 상품을 비교하실 경우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KB라이프생명보험 보험상품 및 가격 공시실: [www.kblife.co.kr](http://www.kblife.co.kr) ■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 비교 공시: [www.klia.or.kr](http://www.klia.or.kr)
- ❖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상품의 기본적인 내용(가입내용, 보장내용, 해약환급금 예시, 알아두실 사항 등) 위주로 안내하고 있으므로, 보험계약 설명(체결) 전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특정페이지만 분리 사용이 불가합니다.



❖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해당 약관 및 상품설명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설계사 교육용으로 제작된 자료로 모집용으로 사용 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해 처벌될 수 있으며, 분리(날장)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 (무)간편한 함께크는 종신보험

## (표준형/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

- 감사합니다 -

